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BK21 플러스> 사업팀 운영규정

2016.10.19 일부 수정 (2016.10.19 BK세미나)
2016.7.5 일부 수정 (2016.7.4 BK21플러스사업 자체운영 규정 제출)
2016.6.10 일부 수정 (2016.6.10 BK위원회 회의)
2016.1.8 일부 수정 (2016.1.8 BK위원회 회의)
2015.11.19 일부 수정 (2015.11.19 BK위원회 회의)
2015.5.27 일부 수정 (2015.5.27 BK위원회 회의)
2014.10.20 일부 수정 (2014.10.6 BK세미나)
2014.8.26 일부 수정 (2014.8.26 BK세미나)
2014.8.12 일부 수정 (2014.8.8 BK세미나)
2014.3.9 제정 (2014.3.5 BK위원회 회의)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가. 본 운영규정은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그린인프라 창조 인재 양성팀” 소속 대학원생 선발과 평가기준, 참여대학원생의 혜택, 참여교수 선정, 신진연구인력 활용방안, 국제협력경비 사용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나. 본 규정 시행을 위해 BK21 플러스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과 사업팀장이 임명하는 참여교수 4인으로 구성한다.

제2조(용어정의) 가. 참여대학원생: 사업팀 참여교수가 논문지도교수 혹은 공동지도교수로서 지도하는 학생 중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일제 학생으로 사업팀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국제화경비를 받을 수 있다.

나. 지원대학원생(이하 연구장학생): 위의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으로, 참여대학원생 총 수의 70% 이내에서 선발된다. 연구장학금과 국제화경비를 받는다.

다. 신진연구인력: 소속 사업팀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박사후과정생 또는 계약교수를 말한다. 인건비와 국제화경비를 받는다.

라. BK위원회: 본 사업팀 참여교수와 협동과정조경학 전공주임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본 위원회에서 참여대학원생, 연구장학생, 신진연구인력의 선발과 평가, 그리고 사업팀 운영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제3조(SCI급 논문) 참여대학원생, 연구장학생, 신진연구인력이 출판하는 논문 중 SCI급 논문(SCI, SCI-E, SSCI, A&HCI)만 본 사업팀의 성과에 포함된다.

제4조(졸업 요구사항) 참여대학원생이나 연구장학생으로서 본 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학위논문을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참여 총 기간이 1년 이하인 학생은 졸업 전 1편 이상, 그리고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은 졸업 전 2편 이상의 SCI급 논문을 제출한 후 게재허가/출판/심사 중이어야 한다. 이 중 최소 1편은 게재확정 혹은 출판 상태여야 한다.

제2장. 참여대학원생 및 연구장학생 선발지침

제1조(신규지원) 가. 지원자격: 협동과정조경학 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았거나 입학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대학원생 중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규지원이 가능하다.

1. 매년 4월 1일, 10월 1일 기준 대학에 등록되어 있고, 4대 보험(고용/건강/국민연금/산재보험)

수혜를 받지 않는 전일제 박사과정생이 지원 자격을 갖는다. 휴학생/제적생/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참여교수의 공동지도학생 제외)은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된다.

2.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은 주6시간 이내의 시간강사 활동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연구 전념에 지장이 없음을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가 확인해야 한다. 사업기간에 취업을 했을 때는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되며, 자격증/명의 대여는 적발 시 즉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박탈하고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환수한다.

3. 해당 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등록은 가능하나 연구장학생에서는 제외된다 (사유: 강의·연구장학금을 받을 시 장학금 이중수혜로 간주됨).

5. 참여대학원생은 국제학술회의 발표, SCI급 논문 출판, 영어 학위논문 작성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전 반드시 학생의 지도교수와 상담을 해야 하고, 지속적인 사업팀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표 1]을 따른다. 그러나, 지원자에 따라 다른 기준을 포함한 주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평가항목	점수	세부사항	반영비율
논문	100점/건	• 지난 3년간 SCI급 논문 출판(계재확정 포함) 실적	주저자: 70% 공저자: (100/저자수)%
학술대회발표	30점/건	• 지난 3년간 국제학술대회 논문 혹은 포스터 발표 여부	구두발표: 70% 포스터발표: 30%
연구계획서	60점	• 현재 SCI급 논문에 투고를 위한 주제 확정 및 원고 준비 여부	0-60점 차등 평가
학점	30점	• 직전학기 협동과정조경학 박사과정 수업에서의 학문적 성취도	(학점/4.3)×100%

[표 1] 참여대학원생 평가기준

나. 지원시기 및 방법: 매년 2월, 8월 (년 2회) 연구계획서(research proposal)를 사업팀 팀장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지원 시간을 엄수하지 못하면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1. 연구분야는 사업팀의 연구 주제인 그린인프라스트럭처를 포함하여 조경학, 생태학, 환경과학, 도시설계학, 인문역사학, 사회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 연구계획서 형식:

1. 언어: 영어 (영문의 완성도도 평가 항목임)

2. 분량과 양식: 참고문헌과 첨부내용 제외 A4 3페이지 이내. 폰트 Times New Roman, 글자크기 11, 상하좌우 20 mm 여백, 줄간격 150%

3. 순서: 제목/이름/지도교수/연락처, 연구목적/질문, 배경/중요성, 연구방법, 예상결과

4. 첨부내용:

1) 지난 3년간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해외저널 출판 현황

2) 향후 6개월 연구계획과 예상성과를 구체적으로 명시 (향후 평가 받을 때 사용됨)

3) 1년 이내 참가할 국제학회명과 장소

4) 1년 이내 투고가 예상되는 SCI급 논문 학술지명 *Impact Factor (IF): 해당분야 상위 20%에 해당하는 저널에 투고를 권장함.

라. 평가: BK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신규지원자는 ①연구장학생, ②참여대학원생, ③탈락 중 한 가지 결과를 받는다.

제2조(연구장학생 지원 및 의무) 가. 기본사항: 연구장학생은 4대 보험

(고용/건강/국민연금/산재보험) 수혜를 받지 않는 전일제 박사과정생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학기별(4월, 10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참여인력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BK21플러스 연구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전일제 학생).
2. 연구장학생은 해당 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생 및 대학 (행정/교무)조교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강의·연구지원장학생 혹은 조교 활동이 불가피할 경우 1회에 한해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이전 참여대학원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학생이 다시 연구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연구진행보고서에 연구에 전념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유: 빈번한 참여여부 변경 방지).
3. 기타 교내장학금이나 기업 등에서 받는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한다.
4. 박사과정 입학 후 만 4년 이내(휴학 및 군복무 기간 제외 총 8학기까지)인 학생만 연구장학생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9학기 차 학생은 사업참여 및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 졸업생, 휴학생, 자퇴생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5. 매달 1일까지 본인 논문의 진행사항을 원고작성/투고완료/심사 중/게재 등으로 사업팀에 알려야 한다.

나. 연구장학금: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은 매년 3월, 9월을 시작으로 매달 약 110만원의 연구장학금을 받는다. 단, 연구장학금 금액은 해당년도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연구실적이 탁월하거나 사업팀 운영 관련하여 기여가 크다고 인정되는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연구장학금 차등 지급이 가능하다. SCI급 논문 게재허가(acceptance letter)를 공식적으로 받은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단, 추가 인센티브 지급은 현재 연구장학생에게만 해당한다. 연구재단 규정에 따라 이 금액과 타 국가사업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합산하여 월 250만원이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구장학생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연구장학금을 지원 받기 시작한 달에서 12개월 이내에 SCI급 논문에 원고를 투고해야 한다. 단, 입학 첫 학기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한 신입생은 6개월의 추가 시간을 준다.
2. 연구장학생은 해당 논문의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여야 한다. 단,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총 저자수가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의 비율로 기여도를 인정하지만, 주저자로서의 논문 투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평가 시 SCI급 논문 중 SCI, SCI-E, SSCI 논문의 Impact Factor에 대해서는 최신 년도의 JCR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각 분야별 상위 20% 이내의 저널에 출판한 경우 평가 시 2배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A&HCI 논문은 Impact Factor가 없으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지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4. 이미 출판이 되었거나 최종 게재확정 통보를 받았고 논문에 본 사업팀의 1) 소속표기(협동과정조경학)와 2) 사사표기가 모두 포함된 것에 대해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 1) 소속표기(영문):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아래 예시를 참조할 것.

Large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of the soil organic carbon stocks (논문제목)

Lily Kim^{1,3} and Youngryel Ryu^{1,2*} (저자명)

¹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협동과정조경학)

²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³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Youngryel Ryu

- 2) 소속표기(국문):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과정”
- 3) 사사표기(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K21 Plus Project in 20XX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Global leadership program towards innovative green infrastructure).”
- 4) 사사표기(국문): “이 논문은 20XX년도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그린인프라 창조 인재 양성팀).”
5. 논문교정료 지원은 학과에서 별도 지원이 없는 학생의 경우 가능하다.
6. 논문 출판 제출증빙자료: 발행일자, 저자 성명, 논문제목, 초록, 교신저자 표시, 사사가 포함된 논문 페이지의 사본을 사업팀장에게 제출한다.

다. 국제화경비: 국제화경비로 국제학술회의 논문 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가 지원된다 (해외 혹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 포함. 국내학술회의는 제외). 장학생으로 선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 혹은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말 중 하나를 기준으로 연간 200만원 이내로 횟수에 관계 없이 지원된다 (연구비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지원 가능한 국제학술회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학술회의의 기준은 ① 4개국 이상 참여, ②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③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단, 국내 개최 시 3분의 1이상) 등이다.

장학생들은 1년에 1회 이상 국제학술회의의 참석이 권장된다.

1) 국제화경비를 요청하는 시점과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는 시점 모두 참여대학원생이어야 한다. 즉, 다음 학기 장학생 선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학회등록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국제화경비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 예외적으로 만약 다음 학기 학회 참석을 위해 국제화경비를 미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사전 후속지원 평가를 사업팀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는 일반 평가와 동일하며, 평가 결과 참여대학원생 혹은 연구장학생으로 재선발될 경우에 한해 국제화경비 사전 지출이 가능하다.

2. 경비를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은 발표 논문 혹은 포스터의 제1저자이자 실제 발표자여야 한다. 발표자가 아닌 경우 국제학술회의의 참여는 자유이지만 경비 지원은 안 되며, 평가 시 공동저자 기준의 비율로 실적이 인정된다.

1) 국제학술회의의 참석 후 7일 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사업팀장에게 제출한다.

2) 결과보고서 양식은 ① 요약페이지(연수자, 연수기관과 회의명, 연수과제, 연수기간, 발표내용), ② 2페이지 이내로 학회에 대한 설명, 연수활동, 장점, 느낀 점 등을 성실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③ 항공권 보딩패스, 여권사본(또는 출입국증명서), 등록비 영수증, 학회프로그램 책자 표지와 본인 게재 부분을 첨부한다.

3. 국제학술회의를 위한 논문교정료 별도 지원은 불가능하다.

4. 항공료,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지급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다 (개인카드 사용 불가).

여비(체재비 등)는 서울대 여비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출국을 위한 비자 발급료 또는 여권발급 수수료는 지원이 불가하다.

5. 참여교수의 경우 제1저자 학생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국제화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6. 국제화경비 중 일부를 해외연수(해외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수행, 국제학술회의 지정토론자 참여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목적이 불분명한 연수, 단순 학술회의의 참여,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현지답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

1) 해외연수나 현지 연구수행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각종 장학금의 지급이 불가하다. 15일이 초과하는 경우 '장기 해외연수'에 해당한다.

- 2) 경비는 1년에 해당 대학원생의 학기당 최대 국제화경비의 절반(예. 한 학기 지원비 약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 총 1년을 지원받는 경우도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라. 장기 해외연수: 연구장학생 중 15일 초과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 우수대학 저명 교수의 지도를 받거나 우수연구실 및 산학실험실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논문을 작성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성실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간 BK집담회 참석률이 60% 이상인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매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1년 기준 5명 이하의 연수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1인 1회 연수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인원과 연수비용에 대해서는 BK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1.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료(해당 대학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② 교육훈련비: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 ③ 해외인턴십활동경비: 해당 대학 여비 규정에 따른 국외 체재비 등이다. 단,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2.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 연구장학생 지급은 불가하다. 그리고 동반 교수에 대해서는 경비 집행이 불가하다.
3. 장기 해외연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사전계획서: 체류목적, 체류기간과 장소, 초청기관명, 초청자(이름, 직급, 연락처), 연수내용과 기대효과, 관련 논문명을 포함하여 A4 2장 이내로 작성한다. 체류기간 시작 30일 이전에 사업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초청확인서와 어학증명서: 해외 우수대학의 교수 혹은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초청목적, 연수자 이름, 초청기간, 공동연구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초청확인서를 체류시작 30일 이전에 어학증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어학증명 기준은 영어권 국가 기준 TEPS(500점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다른 시험 성적, 중국어는 新HSK 5급 이상, 일본어는 JPT 3급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3) 출장신청서: 사업팀 검토 후 승인이 완료되면 항공료 결제내역(e-ticket 등), 기타 각종 경비 영수증이 첨부된 출장신청서를 체류시작 최소 2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4) 연수결과보고: 해외연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연구내용과 관련논문 포함 A4 3장 이내), 출입국사실증명서, 항공권(boarding pass)을 함께 제출한다.
4. 방문성격이 사업 취지나 사전계획서와 맞지 않거나, 연수결과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연수기간의 연장/단축/일시 귀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지도교수와 사업팀장의 논의 하에 조정 가능하다.

제3조(연구장학생이 아닌 참여대학원생 지원 및 의무) 가. 기본사항: 참여대학원생의 기본사항은 연구장학생과 동일하다. 단, 연구장학생과는 달리 강의·연구지원장학생 혹은 조교 활동이 가능하다. 나. 별도 연구장학생 지원은 없으나, 국제화경비 지원 및 장기 해외연수비용 기준은 연구장학생과 동일하다. 그리고 학술대회 및 논문출판과 관련된 지원조건, 소속 및 사사표기 기준은 연구장학생과 동일하다 (연구비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제4조(참여대학원생 및 연구장학생 평가) 가. 평가대상: 현재 참여대학원생 혹은 연구장학생인 대학원생 중 매년 4월 1일, 10월 1일 기준 4대 보험(고용/건강/국민연금/산재보험) 수혜를 받지 않는 전일제 박사과정생을 후속지원 평가 대상자로 한다.

나. 평가시기 및 방법: 매년 2월 말, 8월 말 (년 2회) 연구진행보고서(progress report)를 사업팀

팀장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를 BK위원회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공개 발표한다. 지원 시간이나 발표 시간을 엄수하지 못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핵심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계획서의 예상성과와 실제성과의 비교
2. 국제 SCI급 논문(SCI, SCI-E, SSCI, A&HCI) 출판 혹은 게재확정 여부 (원고 준비사항 포함). 해당 논문의 Impact Factor.
3. 국제학술회의 논문 구두 발표 및 포스터 발표
4. 기타 사업팀에 대한 행정적 기여(예. 홈페이지 관리, 집담회 관리 혹은 회의록 작성 등)

다. 연구진행보고서 형식:

1. 실적
 - A. SCI급 저널 투고/심사중/게재 여부
 - B. 국제학술대회 발표
2. 연구 목표 달성 여부
 - A. 계획서 대비 6개월간 목표 달성 자체 평가
3. 향후 6개월 실적 및 연구 계획
 - A. 향후 6개월간 예상되는 SCI급 저널/국제학술대회/국내학술대회 발표 실적
 - B. 향후 6개월간 연구 목표

라. 평가: BK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참여대학원생 및 연구장학생은 ① 연구장학생(지속 혹은 신규), ② 참여대학원생(지속 혹은 신규), ③ 탈락 중 한 가지로 결정된다.

제5조(BK집담회) 가. 참여교수와 BK운영위원회, 그리고 참여대학원생의 학문적/사회적 교류를 위해 정기적으로 BK집담회를 갖는다. 운영의 주체는 사업팀장이고, 회의당 1회에 한해 모든 참석자에게 식사와 세미나가 제공된다.

나. 모든 참여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은 집담회에 참여가 권장되며, 연속으로 3회 이상 연구 수행 이외의 이유로 집담회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학기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다. 집담회 집행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기준

제1조(선정기준) 가. 사업팀장: 탁월한 연구 및 행정역량을 지니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최근 3년간 SCI급 논문 출판실적이 4편 이상(단순 논문편수)이 되어야 한다.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 및 사업비 5억원 이상 연구과제의 책임자는 사업팀장이 될 수 없다.

나. 참여교수 (사업팀장 포함):

1. 참여교수 전체의 1인당 평균 연구실적이 최근 3년간 4편 이상(단순 논문편수)이어야 한다. 참여교수가 연구자로 포함된 논문은 주/공저자 구분 없이 교수별로 각 1건으로 인정한다 (예: A, B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은 A교수 1건, B교수 1건으로 인정).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표 2]를 따른다.

평가항목	점수	세부사항	반영비율
논문	100점× IF	• 지난 3년간 SCI급 논문 출판(게재확정 포함) 실적	출판 년도 IF×100%

연구비	50점/ 3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3년간 정부·산업체·해외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연구비 실적 	연구책임: 100% 연구참여: 참여율
특허·기술이전	50점/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3년간 특허등록, 기술이전 실적 	주공헌: 100% 기타: (100/공헌자수)%

[표 2] 참여교수 선정기준

2. 신임교수의 경우 논문과 특허는 최근 3년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나, 연구비 및 기술이전 실적 산정 시 신임교수를 모수와 실적에서 모두 제외한다.

3. 국제적 학술활동, 공동연구, 연구비 수주: 참여교수는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ISBN이 부여된 국제 전문학술도서 저술활동(번역서 제외) 등을 수행해야 한다.

참여교수는 다양한 국제 공동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지난 3년간 정부/산업체/해외기관에서 연구비 수주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한다.

4. 참여교수가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도 대학의 장이 학생지도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의 사업팀 참여를 인정한다.

제2조(교체기준) 가. 사업팀장은 참여교수의 자격요건,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시 변경 사유와 연구실적을 첨부해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후 BK21 플러스 사업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신청을 해야한다.

나.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는 없고,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교체시 Impact Factor가 분야별 상위 10% 내에 포함되는 저널에 출판 실적이 있거나 국제화 사업 및 해외 학술교류를 지난 2년 동안 1회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교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3조(성과급 운영) 가.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경비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차등 수당으로 집행하되,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아니한다.

1. 전체 성과급적 경비의 60%는 사업팀 참여교수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한다.
2.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각 교수의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연구실적은 SCI급 논문에 등재된 것으로 한정하고, 주저자 및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 모두를 포함한다.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출판된 논문의 건수와 Impact Factor를 아래의 기준을 통해 계산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나. 연구실적 건수 및 편수 계산

1. BK21플러스 사업 “환산보정 Impact Factor”를 기준으로 한다.
2. 환산보정 Impact Factor = 보정 Impact factor * 환산편수

제4장.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제1조(선발기준) 가. 계약교수 및 박사후연구원 등의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사업팀 내에서 전일제로 주40시간 이상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 선발 당시 그리고 연구기간 동안 타 기관의 4대 보험(고용/건강/국민연금/산재보험) 수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사업팀 팀장의 허락 없이 교내외 다른 연구실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나. 과거 3년간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SCI급 논문 2편 이상을 출판 혹은 게재 확정된 자에 한해 선발한다. 단, 박사학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진연구인력으로 선발된 자에 한해 1편 이상 출판 혹은 게재 확정으로 선발기준을 완화한다. 계약교수는 앞의 논문출판 기준에 추가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 신진연구인력 중 본교 협동과정조경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비율이 2/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신진연구인력 채용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팀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조(인건비, 국제화경비 및 임용기준) 가. 신진연구인력은 월 25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주저자로서 SCI급 논문 게재허가(acceptance letter)를 공식적으로 받은 경우 편당 100만원 이내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단, 인센티브를 받는 시점이 신진연구인력 임용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1년 단위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재임용을 통해 최장 3년간 임용할 수 있다.

나.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장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국제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제화경비 사용은 연구비카드를 통해야 하며, 지원 가능한 국제학술회의 기준이나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는 연구장학생과 같다.

다. 사업기간에 취업을 했을 때는 신진연구인력에서 제외(인건비는 일할 계산 정산)되며, 자격증/명의 대여는 적발 시 즉시 신진연구인력 자격을 박탈하고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환수한다.

제3조(강의) 신진연구인력은 주6시간 이내로 강의가 가능하지만, BK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연구자가 강의 시 주40시간 이상 연구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 전 혹은 계약기간 동안 강의 시간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평가기준 및 해고) 가. 평가기준: 인건비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SCI급 저널에 출판이 가능한 원고 한 편 이상을 작성한다. 1년 이내에 두 편 이상을 작성해야 하며, 한 편 이상이 제출 후 리뷰 중이어야 한다.

나.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체 평가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BK위원회의 결정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자체평가위원회 지침

제1조(평가위원회) 해당 사업의 연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평가위원회를 둔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사업 참여교수 1인 및 사업팀장의 추천을 받은 관련 교내외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사업팀장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2조(평가사항)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가. 연차보고서 작성 및 현장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중간평가에 관한 사항

다. 사업팀 참여 교수간 및 참여 학생간의 차등화 평가에 관한 사항

라. 본 사업실적 및 기타 자체 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